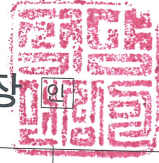


###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17년 11월 03일

적량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강**	강** 1965-11-08	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7-10-23